# [긴급] 국자원 화재로 인한 나라장터 202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안내

▶조달법인강산

2025/10/01 09:48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4028034878

# 【긴급】 국자원 화재로 인한 나라장터 2025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긴급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국자원 화재로 인해 나라장터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202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조달기업 관계자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 ? 변경 주요내용

2025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 변경내용 요약
- 1 '25년 4회차 심사 일정 변경 알림
- 2 '25년 4회차 적용 우수제품심사서 변경 알림
- 분야별 담당자
- 전기전자 분야: 김보람 주무관(042-724-7233, 이메일 kbr0108@korea.kr)
- 정보통신.지능정보, 과기의료, 화학섬유 분야 : 장성훈 주무관 (042-724-7285, 이메일 www.sunghoon@korea.kr)
- 건설환경 분야 : 송정우 주무관(042-724-7223, 이메일 sjwjjjj@korea.kr)
- 기계장치, 사무기기 분야: 김용현 주무관 (042-724-7144, 이메일 nogodan2001@korea.kr)

나라장터 고객센터 운영자 공지사항 2025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

한 줄 요약

2025년 우수제품 4회차 지정 심사 일정이 종합쇼핑몰 복구와 연계되어 조정되었으며, 기술이력서·확약서 제출 의무, 규격추가 심사 확대 등 신청·심사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음.

2025년 4회차 심사 일정 변경

신청서류 제출 기간

종합쇼핑몰 복구일 ~ 2025.10.24.

복구 지연 시 일정 재공지 예정

4회차 심사는 '25년 3회차 우수제품지정심사서를 적용.

2025년 4회차 적용 심사서 변경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지연으로 인해 기존 심사서 적용.

신청 일정

제1회 2025.01.13 ~ 02.04

제2회 2025.04.01 ~ 04.18

제3회 2025.07.01 ~ 07.18

제4회 종합쇼핑몰 복구일 ~ 2025.10.24

※ 접수 후 최종 지정까지 약 3개월 소요.

신청 관련

온라인 접수 필수 (조달청 홈페이지 > 우수제품 > 신청 시스템)

2025년 1회차부터 기술이력서(붙임3) 반드시 제출.

동일 세부품명 기술 4회 탈락 → 5회까지 신청 가능(단, 확약서 제출 필요)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연 4회  $\rightarrow$  6회), 4월·10월 별도 진행

심사 관련

1차 기술심사

- -제출 서류만으로 발표(PT 불가)
- -발표 12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 심사 가능, 필요 장비(카메라·마이크 등) 준비 필요

심사 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명부 제출

유의사항

법령 위반·불공정행위 시 신청 제외.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정취소 등 불이익. 심사위원은 매 회차 달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관련 공지



[긴급공지] ? 나라장터 일부 기능 복구 소식 총정리 (new 실시간 업데이트 중)

안녕하세요, 조달법인강산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나라장터 및 하도급 지킴이 서비스...

# blog.naver.com

생배하구시스템 '85'의 동안하시 용약 학생자 일이 네티스템 안안될만 중 하스만의 이미스만 제공하고의 상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전체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나라장터 서비스 재개 일시 : '25.9.29.(월) 09:00
- □ 이용 가능 서비스 : 나라장터 일부기능

나라장터 서비스명	48	참고사항		
입찰	나의공고 조회 외 차단	- 밤주계획, 사전규래, 입찰공고, 투찰, 개찰 업무 불가		
계약/납품요구	신규(변경) 작성 차단	- 이미 체결 된 계약 목록 조회만 가능 - 물통계약의 직불 수수료고지서는 나라장터 시스템 정상가동 이후 자동발급 예정 - 기존 종합쇼핑몰 납름요구는 나라장터 납품요구 매뉴 이용(나라장터>계약>납름요구)		
검사검수	기능제공	- 기준 중합소명을 검사검수는 나라장대 검사검수 메뉴 이용(나라장대>이행>검사검수>검사검수목록, 비타>이행>대공관리>대공관리목록조회)		
대급청구	기능제공	- 세금계산시 연계 안 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 후 '나라장터 의 발급'으로 등록 - 보증, 재권 조회 가능 - 국세/지방세/4대보험한납증명은 수기처리 필요 - 국항짜군수통합체제 국방재합의 연동이 불가하므로 대급지급이 필요한 경우 국방물자구매과(M2-724-6332)로 문의 후 단행 - e호조(지방재정), 애돔파인(교육재정)은 연계 불가하므로 (연행회 요청당은 핵소방송 후 나라장(제시 검사검수 진행 - 암모병 핵소방송 후 나라장(제시 검사검수 진행 - 암모병 핵소방송 후 나라장(제시 검사검수 진행 - 암모병 핵소방송 후 나라장(제시 검사검수 진행		

### 조달청 나라장터 일부 서비스 먼저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나라장터 서비스가 29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

### blog.naver.com



### [긴급공지]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중지

어제오늘 나라장터에 접속하려다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보고 발만 동동 ...

# ? 관련파일

# 첨부파일

2025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250930).hwpx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아래는 해당파일의 원문을 첨부합니다.

202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2025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 변경내용 요약(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
- **❶** '25년 4회차 심사 일정 변경 알림
- 2 '25년 4회차 적용 우수제품심사서 변경 알림

2025. 9. 30.

# 조 달 청 장

# 1 지정대상

o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2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	제 출 기 간
제1회	2025. 01. 13. ~ 2025. 02. 04.
제2회	2025. 04. 01. ~ 2025. 04. 18.
제3회	2025. 07. 01. ~ 2025. 07. 18.
제4회	종합쇼핑몰 복구일 ~ 2025. 10. 24.

- ※ 종합쇼핑몰 복구완료에 따라 제4회차 신청서류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예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5분(발표 12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u>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u> 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 o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o '25년 1회차부터 신청 제품은 붙임2 '기술이력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o '25년 2회차, 3회차, 4회차 신청 관련 안내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나,
-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18년 제3회차 이후)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5회까지 신청이 가능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동 규정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는 적용하지 않음
- ※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24년 제4회차 심사에서 5회 신청한 제품은 신청 불가
- o '25년 규격추가 심사 관련 안내사항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연 4회 → 6회)
- '25년 4월,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 \* 10월 규격추가 심사는 종합쇼핑몰 복구가 지연될 경우 4회차 심사와 동시실시
-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o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 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 02-590-8830, 8831, 8832, 8834, 8836, 8840, 8848)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 시기 바람
-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 o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o「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5-17호(2025.6.2.)〉」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함
- o 다만, 4회차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지연으로 '25년 3회차 우수제품지정심사서를 적용할 예정
- ※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20번 특허평가보고서는 제출 불필요
- 5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 o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 o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 ※ 우수제품 1차 비대면심사 시 참고사항
- <mark>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를 심사 전일</mark>까지 아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해당 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 기계장치, 사무기기, 건설환경 분야
- : 조성관(Tel. 042-724-7461 / Fax. 0505-480-1643)
- \*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섬유, 지능정보, 과기의료 분야
- : 고나실(Tel. 042-724-7489 / Fax. 0505-480-1354)
- 발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 마이크, 스피커(이어폰 또는 헤드셋) 준비
- 1차 비대면 심사시 심사경로는 안내 예정

# 6 유의사항

- o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 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o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u>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제외,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u>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매 회차 마다 각기 다른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부.
- 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1부.
- 3. 우수제품 기술이력서 양식 1부. 끝.

붙임1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성장유망제품

● (대상제품)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 인정한 제품

\*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 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차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

# 【성장유망제품 대상】

순 번	분야	성장 유망 제품	세부품명번호
1	드론	드론	2513189901
2		초소형 승용전기차	2510150903
3	에너지신산업	태양광발전장치	2611160701
4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BIPV)	2611160702
5		지열히트펌프	4010180603
6	- ~ ~ ~ .	3차원 프린터	2326150701
7	·초연결지능화 -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8	-스마트시티	무인교통감시장치	4617168501
9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
10		주차제어장치	2410168901
11		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	4616152603
12		로봇용접기	2315320401
13	로봇	청소로봇	2315320701
14		산업용로봇	2315329801
15		소방로봇	4619167201
16	기타	성장유망제품으로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신청제품	

# ② (평가방법) 별도의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

- \*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6:4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일반심사와 달리 기술의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로 나누어 평가
- ※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

#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 신제품(NEP), 신기술(NET), 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 등
-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신청(모델)규격내역,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 \* 신청 시 :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 1차 심사통과 시 :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보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여부확인서
- ②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
-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신청(모델)규격내역 미기재,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에 관련 서류(특허증, 원부, 등록공보) 제출

※ ♠과려	트워르 기저시나에	바여하여 펴	가바은 겨오 오스제푸	기저 ㅎ 사ㅎ과리()	<b>-</b>	대하 트워저요 트워 귀리
※ ①관련 특허를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 특허 권리 변동 등) 대상으로 인정되고, ②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						
우						
붙임2 (5	회 신청 업체)					
<u>확약서</u>						
우수조달	물품 확대 시범 운영	!에 따라 확대	시범 대상 여부를 확인	<u>인</u> 하기 위해 <b>당사의</b>	4회 탈락한	· <b>제품에 대한 정보</b> 를 아래외
같이 제출	합니다.				_	
업체명	1차 심사 탈락 회차	세부품명	신청 기술소명자료	기술소명자료 유효기간		
	예) '23년 2회					
		-				
		-			_	
		-				
* 으스제프	 돈 1차 시사 부하겨	<u> </u> 다시 과려 내	 용을 기재(1~4회 탈릭	 	_	
					규정에 따려	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하지 않을 것을 서역		_ "0"— 10		11 0 11 1	
20						
회사명:						
주소:						
대표자: (인)						
붙임3 기술이력서 양식						
<u>기술 이력서</u>						
01-11-51		제품명		. <del></del> .		
업체명		(규격명)	세투 	<del>!</del> 품명		
제품에 적용된 기술 이력(1)						
기술	 :의 종류					해당 기술로 취득한

구분	기술의 종류 (유효기간)	기술 특징	해당 기술로 취득한 우수제품 지정번호
	특허 제00-0000000호 (00.00.00~00.00.00)		
기술	특허 제00-0000000호 (OO.OO.OO~OO.OO.OO)		

신청	기술의 종류 (유효기간)	기술 특징	이전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	특허 제00-0000000호 (00.00.00~00.00.00)		

# 제품에 적용된 기술 이력(2)

<b>I</b> 구분	기술의 종류 (유효기간)	기술 특징	해당 기술로 취득한 우수제품 지정번호
	특허 제00-xxxxxxx호 (00.00.00~00.00.00)		
▮기술	특허 제00-xxxxxxx호 (00.00.00~00.00.00)		
신청 기술	기술의 종류 (유효기간)	기술 특징	이전 기술과의 차별성
	특허 제00-xxxxxxx호 (00.00.00~00.00.00)		

# 주)

- 1. 세부품명 기준으로 작성(두 개 이상 세부품명 신청 시 각각 작성)
- 2. 신청 제품에 적용된 모든 기술을 각각 기재(국내기술에 한하여 작성)
- 3. 지정 신청 기술이 신제품(NEP), 신기술(NET), 혁신제품의 경우 반영된 특허 기재[예시: NEP(특허 10-000000호)]
- 4. 개량 기술이 하나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
- 5. "최초기술"이란 신청 기술과 연관되어 최초 등록한 기술을 말한다.
- 6. "개량기술"이란 최초 등록 이후 개선·향상된 기술을 말한다.
- 7. "신청기술"이란 최초 등록 이후 개량 과정을 거쳐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말한다.

이번 공지는 기업들의 신청 일정과 준비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조달청도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안내된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질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조달 관련 최신 소식과 중요한 공지를 빠르게 전달드릴 테니, 이웃추가 해두시고 업데이트 놓치지 마세요!



